####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91 발의연월일: 2023. 1. 10.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김도읍

김승수 · 박정하 · 엄태영

유상범 • 윤창현 • 이용호

이인선 · 홍문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처·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 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조(「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18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7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 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9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 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 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의11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4조의2, 제 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 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10조(「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 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은행법」의 개정)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6 및 제6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

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5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제4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 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 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 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치"를 각각 "처분 또는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8조, 제9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 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52조의3(이의신청) ①제5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 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 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 용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 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 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 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 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 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 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수 있다.

- 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 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때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 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1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u>기본법」 제29조 각</u>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정 등) ① ~ ⑥ (생 략)	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lt;삭 제&gt;</u>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u>다.</u>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	
<u>정</u>	
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 받은 날부터 30일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18 <u>(이의신청)</u> ①・② (생	제74조의18 <u>(이의신청 특례)</u> ①・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	③
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u>통보</u> 하여야 한다.	<u>통지</u>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	에 따른다.
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u>다.</u>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u>&lt;삭 제&gt;</u>
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	
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u>④</u> (생 략)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60조(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 정 안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간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70조(행정심판) 금융위원회, 증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

 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알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개 정 안

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 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 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67조(이의신청) ①제64조의 규 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 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 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 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개 정 안

제67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 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 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 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 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 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 청하여야 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 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 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때
-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 <u>(이의신청)</u> ①·② (생 략)	제37조 <u>(이의신청 특례)</u>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에 따른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 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개 정 안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 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 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에 징수할 수 있다. 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 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 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 다.

시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 <삭 제>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 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 <삭 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 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할</u>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 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4조의 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 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 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 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 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 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 법」 제36조에 따른다.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8조의5(이의신청) ①제38조의2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 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u>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8조의6(과징금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 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 개 정 안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 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 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 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 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 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 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 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 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 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 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u>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u> <u>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u> <u>한다.</u>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였을 때
-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 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 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있을 때</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65조의6(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개

정

아

- 제65조의6(이의신청) ① 제65조의 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 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 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 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 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_ 제36조에 따른다.
-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 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 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 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 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u>한을 연기하</u>거나 과징금을 분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 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 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 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 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

-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 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 하였을 때
-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 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 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5조 <u>(이의신청)</u> ① (생 략)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
	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
<u>할 수 있다.</u>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제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
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 조를 준용한다. 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 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 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 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 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 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 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 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56조(이의신청) ① 제53조제1항 제56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부 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치 처분 또는 조치----- 처분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 또는 조치----- 처분 또는 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에 따른다.